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5179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2.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지분 비율로 취득하고,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매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원고 K, L의 경우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서 1천 분의 30의 세율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6억 원 이하로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시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정한 다음, 취득 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보면, 취득대상이 공유물일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부부를 합산하여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수인이 각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주택을 공유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유자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공유자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취득세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의 각 호는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각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는바, 이는 공유물의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이고, 세율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한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각 공유자별로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위 결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들어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②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가목에서 농지는 '1천분의 30'을,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8호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위 제7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세율은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감경하여 농지취득의 경우보다 같거나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③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제2조에 따라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경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하였다.

주택의 경우 이와 같이 취득세를 감경하여 온 취지는,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공유자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택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게다가 공유자별로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여지가 있고, 중산층의 주택구입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3)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한편,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는 어떠한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반드시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유하는 모든 자들 사이를 규율할 수 있어서 부부를 다른 공유자들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목 록

순번	성명	취득부동산	매입시기	매입금액	등기일	지분	거부처분일
1		[] 대 166㎡ 및 위 지상 건물	2013-09-30	690,000,000	2014-01-15	7/10	2015-08-21
2			2013-09-30		2014-01-15	3/10	2015-08-21
3		[] 대 152.1㎡ 및 위 지상 건물	2014-01-02	850,000,000	2014-03-17	1/2	2015-08-21
4			2014-01-02		2014-03-17	1/2	2015-08-21
5		[] 대 146㎡ 및 위 지상 건물	2014-01-16	790,000,000	2014-04-10	1/2	2015-08-21
6			2014-01-16		2014-04-10	1/2	2015-08-21
7		[] 대 160.7㎡ 및 위 지상 건물	2014-03-10	820,000,000	2014-05-09	1/2	2015-08-21
8			2014-03-10		2014-05-09	1/2	2015-08-21
9		[] 대 165.3㎡ 및 위 지상 건물	2014-09-19	700,000,000	2014-11-05	1/2	2015-08-21
10			2014-09-19		2014-11-05	1/2	2015-08-21
11		[] 대 163.6㎡ 및 위 지상 건물	2014-05-09	1,117,000,000	2014-09-02	1/2	2015-08-21
12			2014-05-09		2014-09-02	1/2	2015-08-21
13		[] 대 124.7㎡ 및 위 지상 건물	2014-08-01	870,000,000	2014-10-01	1/2	2015-08-21
14			2014-08-01		2014-10-01	1/2	2015-08-21
15		[] 대 172㎡ 및 위 지상 건물	2014-08-27	898,000,000	2014-10-20	1/2	2015-08-21
16			2014-08-27		2014-10-20	1/2	2015-08-21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11

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끝.